

# 2023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

광진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9조의3에 따라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함

## □ 공개일 / 공개방법

- 2023. 3. 10.(금) 광진구 홈페이지([www.gwangjin.go.kr](http://www.gwangjin.go.kr))

## □ 취업심사 결과

- 광진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3년 제1회 위원회를 개최('23. 2. 24.) 하고 1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함.
-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 요청 1건에 대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와 취업예정기관 간 ‘밀접한 업무 관련성 없음’ 으로 결정하고, 우선취업 신청에 대해서도 ‘승인’ 결정함

## [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]

심사구분	결정내용	설 명
취업제한 여부 심사	취업가능	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·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
	취업제한	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·기관 업무와 취업예정
취업승인 심사	취업승인	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(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 제34조제3항각호)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
	취업 불승인	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 제34조제3항각호에서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*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*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, 경영개선, 임용전 종사 분야,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

**참고 1****2023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**

연번	퇴직당시			취업(예정)		심사결과	결정사유
	소속	직위(직급)	퇴직일	업체(직위)	일자		
1	건축과	시설7급	2021년 1월	원영건업(주) (과장)	2023년 1월	취업가능	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

□ 업무관련성 판단 근거

<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>

- 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·장려금·조성금 등을 배정·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
  - ② 인가·허가·면허·특허·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  - ③ 생산방식·규격·경리 등에 대한 검사·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  - ④ 조세의 조사·부과·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  - ⑤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·검사·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  - 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
  - ⑦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사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·심판과관계되는 업무
  - ⑧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- (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)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

□ 취업승인 사유

<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>

- ①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
-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
-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(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)로서 당해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⑤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
- ⑥ 채용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직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했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
- ⑦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(이)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)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 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
- ⑧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·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
- ⑨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·자격증·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